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미국 사법부, 크레디트카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이유로 VISA 및 마스터카드를 민사 제소

미국 사법부는 크레디트카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이유로 미국의 2대 크레디트카드 그룹인 VISA 및 마스터카드 양사를 민사 제소하였다. VISA 및 마스터카드 양 그룹은 모든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상품 구입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복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동일단체가 양 그룹을 공동으로 지배 함(은행업계에서는 이중성 "duality"라고 불리고 있음)으로서, 양 그룹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양 그룹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나 디스커버사 등 타 크레디트카드 그룹과 거래하는 은행의 능력을 제한하는 배타적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넷 리노 사법장관은 「VISA와 마스터카드에 의한 반 경쟁적 행위는 대기업 그룹간의 경쟁

을 제한하고 중소 크레디트카드 그룹의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쟁상의 독창력 (initiative)이 포기, 지연 및 억압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폭은 좁아지고 카드그룹간의 경쟁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VISA 및 마스터카드의 양 그룹은 가맹은행에 의하여 소유, 관리, 경영이 되고 있는 조합(association)이다. 사법부는 VISA 및 마스터카드의 양사가 경쟁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재정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은행에게 위임함(은행업계에서는 이중성 "duality"로 불리고 있다)으로 인하여 반트러스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소비자를 일방의 카드그룹에서 타 카드그룹에게 환승 시키는 것과 같은 경쟁에서의 독창력 (initiative)을 거부하고 있다.

조엘 크라인 사법부 반트러스트 국장은 「이 제소는 크레디트카드 상품에 있어서 혁신과 품질의 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 폭넓은 선택을 주게 된다. 크레디트카드 그룹간의 활발한 경쟁은 소비자가 최선의 지불방법, 특히 크레디트카드나 전자적인 형태로 지불을 가능케 하여 보다 많은 거래가 행하여짐으로서 보다 큰 혜택을

받도록 보증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소장에 의하면 「이중성」에 의하여 몇 가지의 측면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VISA와 마스터카드는 광고활동에서 서로를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마스터카드(다기능형 IC카드), 커머셜카드(commercial card : 기업이 회원이 되는 카드) 및 인터넷(international network)을 통하여 안전한 카드거래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카드상품 및 기술의 개발을 지원시키고 있다. 또한 이중성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상품, 서비스 및 신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마저도 제안되지 않았다.

소장에서는 이중성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음을 인정한 VISA 및 마스터카드의 현직 및 정식직원의 증언이 인용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어떤 VISA사의 간부는 「우리가 마스터카드 사에게 타격을 주는 공격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VISA카드의 임원회에 출석하고 있는 멤버 은행은 마스터카드의 임원회에도 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소장에서는 또한 「이중성 때문에 시장에서 마스터카드와 VISA가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는 내용의 마스터카드 간부의 증언도 인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또한 VISA 및 마스터카드가 자기 회원사 은행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나 디스커버사 등 다른 크레디트카드 그룹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인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VISA 및 마스터카드사가 가맹은행에게 상호의 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일방으로 만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는 디스커버카드를 발행한다면 그 은행은 VISA 및 마스터카드를 발행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크라인 국장은 「고객에게 VISA나 마스터카드 이외 카드의 선택폭을 넓혀주고자 생각하는 은행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용하는 카드종류의 선택폭은 좁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디스커버 등의 카드회사는 자사의 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을 실제로 방해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장에서는 특히 카드소유자의 은행과 관계되는 데빗카드(Debit card : 결재를 후불방식이 아니고 카드회원의 예금구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카드) 및 스마트카드에서 이러한 배타적 규정때문에 다른 카드그룹이 VISA 라든가 마스터카드와 경쟁하는 능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도 언급되고 있다. 다른 카드그룹에 의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된다면 새롭고 또한 질좋은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사법부에 의하여 마련된 배제조치(안)에는 조합(association)을 운영하

고 있는 은행들을 어느 쪽이든 하나의 카드그룹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는 또한 상기 배타적 규정을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안건은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소되었다. VISA USA사 및 VISA 인터내셔널사는 이 소송의 피고인이 되었다. 양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법인이다. 또 다른 피고인은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사로서 뉴욕의 파제스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 법인이다.

■ '98. 10. 7. 미 사법부 발표

**미국 사법부, 노스웨스트
(North-west) 항공사에 의한
컨티넨탈(continental) 항공사
매수계획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소**

미국 사법부는 지난 '98년 10월 23일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사에 의하여 컨티넨탈 에어라인사의 자배적 주식의 취득계획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는 미국의 항공회사들 가운데 각각 제4위와 제5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수송서비스 공급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매수계획은 노스웨스트사가 컨티넨탈사를 자배하는 의결권부 주식의 취득과 이에 대한 배당의 취득을 허용하는데 있다. 이 매수계획이 이루어지면 양사에 의하여 지배되는 노선에서 400만명 이상의 여객에게 항공운임을 인상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

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죄엘 크라인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하였다.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는 상호간 유일의 경쟁사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사가 거점으로 하고 있는 도시간의 논스톱 항공서비스에 관해서는 상호최대의 경쟁업자라고 사법부는 언급하였다. 노스웨스트사는 디트로이트, 멤피스 및 미네아폴리스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 컨티넨탈사는 클리브랜드, 보스톤 및 뉴욕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사는 다수의 도시간의 항공운송에서 시장지배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들 도시간에 왕복하는 수백만의 여객은 매년 3억5천만불 이상 지불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노스웨스트사는 재정가인 데이빗 폰타만과 그 파트너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당해 주식은 컨티넨탈사 주식의 14%이지만 의결권은 51%로 결국 의결권지배(voting control)를 의미하는 것이다. 컨티넨탈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노스웨스트사는 당해 주식을 6년간 의결권 신탁(voting trust)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소장은 의결권 신탁의 취득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경쟁적 취득은 어떤 경쟁자를 타경쟁자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 장기적 의결권 신탁이나 기타 작위적 법적수단을 가지고 그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컨티넨탈사가 노스웨스트사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노스웨스트사와 대립하는 경쟁적 전략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진실로 독립된 경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발한 경쟁을 향유해야 한다,라고 크라인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는 국내 노선에서 공동마케팅을 위한 제휴를 계획하고 있다. 사법부는 상기 주식취득과는 별도로 당해 제휴계획의 일부에 경쟁상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후에도 심사가 계속될 것이다.

노스웨스트사는 센트폴시에 본사를 두고 1997년 매상고가 102억불의 미네소타주의 회사이다. 컨티넨탈사는 텍사스주 휴斯顿시에 본사를 두고 1997년도 매상고가 71억불의 델라웨어주의 회사이다.

■'98. 10. 23, 미 사법부 발표

미국 법무부, AT&T사와 TCI 간의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12월 29일, AT&T사와 대형 유선방송회사인 Tele-Communications Inc.(TCI)간의 400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TCI가 경쟁 전화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인가하였다.

AT&T사는 미국 최대의 무선 이동 전화서비스 제공업체로서 9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TCI는 미국 제2위의 유선TV방송업체이며 또한 Sprint

PCS라 불리는 Sprint사의 이동전화사업 지분 약 23%를 보유하고 있다.

TCI는 반트러스트 심사 통과를 위해 Sprint PCS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여야 한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밝혔다.

당해 매각은 통화료의 인하 및 이동전화업체들간의 경쟁 증대 경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Klein 국장은 언급하였다.

“오늘(12월 30일)의 이러한 화해안은 당해 기업결합이 더욱 경쟁적인 무선전화서비스 시장으로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Klein 국장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략 6,000만 명의 미국인이 무선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고객들은 올해 무선전화서비스 이용으로 300억달러를 지출하였다.

화해안의 조건에 따르면 AT&T사와 TCI는 당해 기업결합이 종료되기 이전에 Sprint PCS의 지분을 독립적인 관재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관재인은 대략 5년에 걸쳐 당해 지분의 매각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또한 Sprint PCS 주식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AT&T사와 Sprint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실제로는 올해(1998년) 520억달러의 수입을 올린 뉴욕에 소재한 AT&T사가 올해(1998년) 75억달러의 수입을 올린 콜로라도에 소재한 TCI를 취득하는 형태이다.

AT&T사의 대변인인 Burke Stinson은 동 회사는 1999년 여름 이전에 기업결합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하

였다. 동 회사의 법률고문인 Jim Cicconi는 성명을 통해 이번 기업결합 인기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다.

AT&T사는 당해 기업결합이 인가될 경우 지역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TCI의 유선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Cicconi 고문은 Sprint PCS 지분의 매각이 법무부 반트러스트 당국이 부과한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AT&T사는 기업결합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당해 사업부문을 매각할 뜻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Cicconi 고문은 말하였다.

TCI 대변인인 Katina Mahadamis는 동 회사는 별도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TCI가 보유 내지 제휴하고 있는 유선TV시스템은 미국 전기정의 약 3분의 1에 연결되어 있다. 시스템 개선이 끝나면 AT&T사는 가정의 고객들에게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유선TV,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전화회사를 포함한 비판자들은 기업결합된 이들 두 기업이 다른 회사들이 TCI의 고속회선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 인터넷 및 전화서비스에 대한 경쟁은 훼손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지난 '98년 6월에 공표된 이번 기업결합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통신산업 분석가인 Jeffrey Kagan은, 아메리카 온라

인사 및 기타 회사들이 TCI의 고속회 선에의 접속을 탐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FCC의 심사가 개시되어야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Kagan은 FCC도 당해 기업 결합을 인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핵심적 부분은 인가될 것이지만 AT&T사와 TCI가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최근 몇 건의 통신산업에서의 초대형 기업결합들 중 하나이다.

Bell Atlantic Corp.사와 GTE Corp.간의 651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은 지난 7월에 제안되었으며 아직 심사중이다.

SBC Communications Inc.는 지난 5월 Ameritech Corp.를 602억달러 규모의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 기업결합도 또한 아직 심사중이다.

WorldCom Inc.는 MCI Communications Inc.와의 370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다.

■'98. 12. 30, The New York Times

미 FTC, British Petroleum-Amoco 기업 결합 인가

British Petroleum사와 Amoco사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미국 반트러스트 당국이 12월 30일 이를 인가함으로써 석유산업 최초의 대형 기업결합이 마

지막 장애물을 통과하였다.

당해 기업결합 인가 조건으로서 이들 두 회사는 134개소의 주유소를 처분하고 석유 도매시장에 대한 두 회사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새로이 탄생하는 회사의 영향력에는 거의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말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미국에서 만 15,300개소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당해 기업 결합 인가결정에 따라 지난 달 합의된 보다 큰 규모의 두 석유회사, 즉 엑슨사와 모빌사간의 기업결합도 규제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FTC는 이러한 기업결합이 일상적인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뉴욕에 소재한 Credit Suisse First Boston의 분석가인 James Clark은 말하였으며, 정치적 고려가 에너지산업에서의 기업결합 검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엑슨/모빌 기업결합이 종국적으로 규제당국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보다 광범한 “정치적 광경” 및 보다 감정적인 반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비록 BP사와 Amoco사의 기업결합은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연관된 것이지만, 그리고 석유산업에서 상당한 집중의 경향이 존재하지만, 이들 두 회사의 활동은 경쟁을 위협할 정도로 중첩되는 분야가 거의 없다”라고 하

였다.

그는 중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소비자가 경쟁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한 자산매각 및 기타 교정수단”이 취해졌다고 덧붙였다.

Pitofsky 위원장은 또한 FTC는 만일 장래의 에너지산업에서의 기업결합이 시장력 집중의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임도 시사하였다.

월스트리트는 이를 앞으로 석유회사들간의 기업결합은 규제당국과의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는 암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경고문구로 받아들여졌다. Clark는 엑슨/모빌 기업결합이 워낙 대규모인 관계로 이는 일종의 규제 “우산”을 형성하여, 이보다 규모가 작은 차후의 기업결합계획은 심사 통과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FTC는 미국 석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고 하였다. BP사와 Amoco사는 약 1,600개소의 독립적 주유소에 대하여 공급계약 취소의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두 회사는 다수의 제품 저장소들을 경쟁 유통회사인 Williams사에 매각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런던 시각으로 12월 31일 오후 7시에 완료될 것이며, BP사는 1월 4일 주식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런던증시의 FTSE 100 지수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이 회사들은 밝혔다.

■'98. 12. 31, Financial Times

미 법무부, 의치 제조업체를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제1위의 의치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들을 압박하여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게 독점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동업체를 기소하였다.

델라웨어주 Wilmington의 연방지방 법원에 제기된 동 반트러스트 소송의 소장에서 Dentsply International Inc.는 미국 유통업체의 80%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제한 협정을 실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펜실베니아주 York에 소재한 Dentsply사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치의 70%를 판매하는데, 이는 10년 이상 유지된 시장점유율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동 소장에서는 1987년부터 외국 의치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의 진입을 시도하였을 때 Dentsply사가 거래업체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이 경쟁업체의 의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정으로 인해 Dentsply사의 경쟁업체들은 미국 판매망을 이용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일의 소송은 의치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시켜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높은 품질의 의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언급하였다.

정부측의 소 제기에 대하여, Dentsply사의 임원들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 99. 1. 6, Los Angeles Times

미 FTC, 신발산업 가격고정 조사 일환으로 Nine West사 조사

Nine West Group Inc.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예비조사는 동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신발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진행해 온 일련의 가격고정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1월 13일, FTC는 Nine West사가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제품을 할인하지 말고 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Nine West사는 이와 관련하여, 자사는 FTC에 협조하고 있으며 자사의 정책이 “재판매 가격설정에 대한 적용법규에 비추어 적절하고 유효한” 것임을 믿고 있다고 하였다.

FTC는 1992년부터 다양한 일상용 신발 및 운동화 제조업체들을 조사하여 왔으며 New Balance Athletic Shoes Inc., 리복사, Stride Rite Corp. 및 동 회사의 자회사인 Keds사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들 회사들은 FTC와의 동의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수백만달러의 벌금 지불에도 합의하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FTC가 Nine West사에 대한 제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Nine West사와 동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백화점들간에 담합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해 제조업체가 소매업

체들과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반트러스트법상 제약을 회피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이는 반트러스트법의 어느 측면을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또한 정부측의 기본입장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라고 워싱턴에 소재한 Patton Boggs 법률 회사의 반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인 Garret Rasmussen은 말하였다.

레이건 정부 하에 있었던 1980년대에는 재판매가격유지로 알려져 있는 가격고정에는 대부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보수적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업체들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원들로 하여금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전하도록 하겠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을 사기 위해 할인업체들을 찾기 때문에 할인 소매업체들이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클린턴 대통령 정부의 반트러스트국장인 Anne Bingaman이 등장하면서 바뀌었는데, 그녀는 하키용 스케이트, 선탠용 제품 및 장난감을 둘러싼 3건의 이른바 수직적 가격고정 사건의 제소를 주도하였다.

운동화 시장은 1992년 가을에 정밀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조사는 리복사가 “Centennial Plan”이라는 명칭의 계획을 통해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성수기에는 가격을 할인하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개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디수의 소매업체들이 연방규제당국에 대하여 당해 관행을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당해 산업에서 일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 몇 건

의 가격고정 제소사건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소매업체는 인기있는 패션 브랜드제품들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 서는 제조업체로부터 권장소매가격을 유지토록하는 압력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받고 있다. 유명상표 신발업체들은 “권장가격을 준수할 소매업체들과 거래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뉴욕에 소재한 소매업 컨설팅 회사인 Doneger Group의 수석부 사장인 Tom Burns는 밝혔다.

소매업체들과 공급업체들 사이에서는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의 권장 소매가격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양해”가 존재한다고 Kurt Salmon Associates의 판매전략 담당이사인 Arnold Aronson은 말하고 있다. “제품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제품을 둘러싸고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는 제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1995년 리복사 제소사건에서, 매사추세츠주 Stoughton에 소재한 리복사는 지정 가격수준 이하로 제품들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동 회사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다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950만달러의 지불에 합의하였다.

FTC에 따르면 리복사는 소매업체들을 압박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데 합의하도록 하였다 는 것이다. 몇몇 소매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최저 소매가격으로 추정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 최고 30%까지 가격인상을 하였다고 FTC는 주장하였는데, 이는 리복사가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주문물량을 채워 주지 않을 것임을 우려해서였다는 것이다.

리복사와 그 자회사인 Rockport Co.는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매업체들의 리복사 브랜드제품 판매 내지 선전가격을 설정 내지 규제하지 않을 것 및 이들이 권장가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이나 거래단절 등으로 이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

■'99. 1. 14, The Wall Street Journal

불과 4개 미국 업체만이 HPL을 생산하고 있다.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Formica사는 세계 전체로 제1위의 HPL 판매업체이며 미국 내 제2위의 공급업체이다. International Paper사는 전세계적인 종이 및 나무 제품 회사로서 본사는 뉴욕주 Purchase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로 제3위의 HPL 판매업체이고 미국 내 3위의 공급업체이다. International Paper사는 미국 내에서는 Nevamar 및 Micarta라는 상표명으로 HPL을 제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Polyrey 상표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가정, 식당 및 사무실용 제품에 고압 합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반면 서비스는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Joel I.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은 언급하였다.

■'99. 1. 15,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Formica사의 International Paper사 HPL 사업부문 취득 저지 공표

미국 법무부는 1월 15일, Formica Corp.에 의한 International Paper Co.의 고압 합판 사업부문 취득이 일반용 천장 및 책상 상판 재료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이러한 기업결합 계획이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미국 고압 합판(HPL) 시장에서 주요한 한 경쟁업체를 제거하는 결과가 되어, 나머지 지배적인 업체들이 가격을 상호조정하기가 더욱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Formica Corp.가 자사제품 상표로 사용하는 “호마이카”는 일반대중에 잘 알려져 있고 충격에 강한 장식용 표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HPL로서 부엌 및 목욕탕 천장, 식탁, 문, 책상 상판 및 작업장 표면 등에 이용된다.

미국, 전력자유화 관련 독점법 재검토를 일본에 촉구

미국정부는 통산성에 대하여 일본의 전력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재검토하고,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대형 전력회사의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관청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기집단에 의한 규제관청을 설치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미국정부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이 진전되면 해외기업에도 진입기회가 주어지고, 일본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하고 있다.

의견서는 일본의 전기사업심의회(통산상의 자문기관)가 작년 12월에 제출한 전력소매의 부분자유화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미국정부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전력산업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독점금지당국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독점법을 개정하여 전력분야에서 동 법을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공취위의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강대한 기존전력회사에 의한 시장지배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독점규제관청은 전력회사의 요금심사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규제완화분야에서 경쟁에 따라 가격인하를 압박받는 상태에서 규제가 남아 있는 사업분야의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가 없도록 감시, 공정경쟁을 철저히 추구하게 된다.

의견서에서는 이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가격경쟁 촉진의 열쇠를 준다고 볼 수 있는 송전선의 사용량(탁송료)에 대하여서도 비용을 반영해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기사업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안이 지나치게 고가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심의회의 보고서는 부분자유화에서 전면자유화에로 이행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애매하고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99. 1. 17. 일본경제신문

E U

유럽위원회, 맨체스터 공항에서 Menzies사와 Lufthansa사 간의 합작투자사업 인가

유럽위원회는 Lufthansa Airport and Ground Services GmbH(이하 "LAGS사"라 함)와 Menzies Transport Services Ltd.(이하 "MTS사"라 함)간의 합작투자사업인 Sigma Aviation (UK) Ltd.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Sigma사는 현재까지 100% LAGS사의 자회사인데, 이미 맨체스터 공항에서 독립업체로서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및 승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9%의 지분 취득을 통해 MTS사는 Sigma사를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Deutsche Lufthansa AG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LAGS사는 주로 승객 안내와 화물 취급 서비스 제공 및 항공운송 관련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MTS사는 John Menzies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주 활동영역은 서적, 잡지, 음반 및 영상물의 유통 및 화물 지상취급과 화물 전송이다. LAGS사와 MTS사는 이미 London Airport System 소속의 공항(히드로, 개트윅 및 스탠스테드)에서 화물 취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작년 7월 7일 이를

인가한 바 있다.

Sigma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련시장은 맨체스터 공항에서의 항공기 지상취급 및 승객 안내이다. 당사자를 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항공기 취급이나 승객 안내 어느 쪽에서도 15%를 넘어서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다른 경쟁업체들로서는 British Airways 및 British Midland, 그리고 Servisair사나 GHI사와 같은 독립적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Sigma사보다 높다.

이렇듯 Sigma사의 낮은 시장점유율 및 맨체스터 공항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때 당해 합작투자사업 설립은 EC 기업결합 규칙상 경쟁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유럽위원회는 판단하였다.

■'99. 1. 13. 유럽위원회 보도

호 주

호주 경쟁당국 권한 강해져

호주 정유업체들간의 기업결합계획 포기 및 호주 최대의 통신회사가 부과하는 접속료에 관한 결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에는 호주 반트러스트 및 소비자보호기관의 권한 강대화가 주목을 받았다.

1월 21일, Mobil Oil Australia사는 동회사가 호주 정유공장 합병계획에 관

하여 Royal Dutch/Shell사의 지역 자회사인 Shell Australia사와의 논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였다.

Mobil Oil Australia사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ACCC의 인기를 얻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8월 당해 기업결합 계획을 발표한 이후 ACCC와의 논의를 계속하여 왔었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Allan Fels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시사하여 왔었다.

지난 12월 미국의 모회사인 모빌사와 엑슨사가 전세계적 기업결합 계획을 발표하자 Mobil Australia사 내에서는 비관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호주의 다른 두 주요 정유업체인 BP Australia사와 Caltex Australia사가 자신들도 지역적 합작투자사업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히자 더욱 심화되었다.

1월 21일 밤, Shell Australia사의 집행이사인 Peter Duncan은 Mobil Australia사의 기업결합 포기 선언에 대해 "실망하였다"고 밝혔다.

이보다 이를 전, ACCC는 Telstra사에 대하여 다른 전화회사들이 동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부과하는 접속료를 반으로 낮추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Telstra사를 실망시킨 바 있다. 예비결정에서 ACCC는 Telstra사의 접속료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Telstra사가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 연결을 위해 경쟁업체들

이 동 회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대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ACCC와 Telstra사간의 최근 법적 다툼과 관련된 것인데, 동회사 지분의 3분의 2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에 ACCC는 Telstra사가 경쟁업체들이 시내 전화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쟁업체들에게 동회사의 네트워크를 개방하여야 한다는 역사적인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Telstra사는 이번 주에 ACCC의 최근의 명령으로 인해 동 회사는 네트워크 투자를 줄이고 도서지역의 회선 임차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Fels 위원장에게 있어 이러한 결정은 모두 "호주 소비자의 보호"라고 스스로 명명한 사명의 일부이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ACCC가 정부의 거래관행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이전의 역할로부터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94년부터 ACCC는 전세계 대다수의 반트러스트 내지 공정거래 당국보다 강력한 권한을 발전시켜 왔다.

작년에 동 위원회는 CD 병행수입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했다. 올해에는 호주의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통합계획을 포함하여 여러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1994년 이후 ACCC가 경쟁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37건의 기업결합 계획 중 60%가 포기되었다. 법원에 제기된 3건의 소송 중 ACCC는 2건에서 승소

■'99. 1. 22, Financial Times